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664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7. 19.

판 결 선 고 2024. 8.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2. 12.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7. 접수 제1823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 19. B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C에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9,000,000원, 보증기한 2026. 1. 16.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23. 2.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3. 5. 10.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C에 19,848,2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6.

1. ‘B은 원고에게 19,848,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차전116261호)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3. 7. 4.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22. 12. 1. B과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42,95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7. 접수 제1823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보증약정이라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일어난 신용보증사고로 원고가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2. 12. 1. 무렵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단지에 속하고 같은 면적을 가진 다른 아파트가 1,225,000,000원에 매도된 바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2. 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된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022. 12. 1.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1,110,000,000원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이미 처해 있었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제5층 호 112.7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 73883.9㎡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 7246.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73883.9분의 45.209

- 1) 변론종결 후 제출된 서면 및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동일하게 판단된다.